

1. 제정이유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대기실 설치 목적·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운영 및 안전대책, 입실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출국대기실의 설치 목적임을 명시하고, 정의를 규정함

나. 출국대기실 입실 절차 (안 제3조 ~ 안 제6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 입실하는 경우 신체·소지품 등을 검사하고,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하여야 하며,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의 국적·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함

다. 생활용품 지급과 대여 (안 제7조 ~ 안 제8조)

청장등은 입실기간 동안 이불·담요 등 침구를 제공하고, 세탁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건·칫솔·위생용품 등 필요한 생활용품을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라. 음식물 제공 등 (안 제9조 ~ 안 제10조)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실자의 식생활 및 문화 등을 고려하여 하루 세 차례의 주식 및 부식·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입실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위생·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함

마. 환자 및 감염병 발생시 조치(안 제11조 ~ 안 제13조)

청장등은 환자인 입실외국인에 대해 의사 등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하고,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 발생 시 분리조치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함

바. 입실외국인의 생활 (안 제14조 ~ 안 제17조)

물품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외출을 허가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도주방지 등을 위해 공무원이 계호하여야 하며, 입실외국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사. 면회와 통신 (안 제18조 ~ 안 제19조)

입실외국인은 영사 또는 변호인 등과 절차에 따라 면회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휴대전화등의 사용 및 수·발신을 제한할 수 있음

아. 안전대책 등과 질서유지 (안 제20조 ~ 안 제21조)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CCTV, 녹화 영상, 사진을 보전할 수 있고, 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화재 등의 긴급사태 발생 시 지정된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함

자. 퇴실 절차 (안 제22조 ~ 제23조)

출국 등을 위하여 입실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서 퇴실시킬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퇴실외국인에게 입소 당시와 다른 신체 장애·상처가 있는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음

아. 입국불허통지서 서식 마련 (안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입국불허통지서 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출국대기실의 운영 및 안전대책, 출국대기실 입실 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장등”이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을 말한다.
2. “입실외국인”이란 송환대상외국인 중에서 출국대기실에 입실한 외국인을 말한다.

제2장 출국대기실 입실 절차

제3조(외국인의 입실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국불허 사유, 송환대기장소, 송환대기장소 변경 절차 및 송환절차 등이 기재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입국불허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출국대기실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여권 및 입국불허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입실시켜야 한다. 입

국불허통지서는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은 입실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출국대기실 외의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 이용 여부

2. 질병, 상처 등 건강상태

3. 가방, 귀금속 등 소지품 보관 희망 여부

④ 입실외국인이 출입국항 내의 출국대기실 이외의 장소에서 대기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영 제88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장등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출국하기 전까지 청장 등이 지정한 구역에서 대기

2. 출국하기 전까지 1일 1회 이상 건강 상태를 담당공무원에게 통보

3. 출국항공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일시 및 사유를 담당공무원에게 통보

4. 출국하기 전까지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

5. 출국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법령, 공항 내 보안규정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

6 그 밖에 청장등이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의 안전확보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준수

⑥ 청장등은 입실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적 처우 등을 위해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자

2. 임산부

3. 노약자

4. 「민법」에 의한 미성년자 중 그 보호자가 없는 사람

5. 이 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진행 등으로 장기 대기 중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청장등이 특별히 처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전담공무원은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 배정, 급식, 진료, 안전 등에 있어서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① 담당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입실외국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 신체, 의류 및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출국대기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거나 입실외국인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

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同性)의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입실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

제5조(생활규칙) ① 청장등은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에 입실외국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서 정한 생활규칙 및 소송제기 등 권리구제 절차, 처우에 대한 이의신청, 외부 진료 신청 방법, 변호인·영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실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입실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생활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실외국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 등을 청소·정돈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입실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방 배정) ①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의 국적, 성별, 종교,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입실외국인 중 남자는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청장등은 출국대기실의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환자·임산부, 성적(性的) 소수자 등에 대해 별도의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간호·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과 함께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방별 입실외국인 현황표를 작성하여 출국대기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지급과 대여

제7조(침구 대여) ①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에게 이불, 담요, 매트리스, 베개(이하 “침구”라 한다) 등을 대여하여 입실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침구의 제식은 「외국인보호규칙」 별표 4와 같다.

③ 침구의 계절에 따른 사용 구분 및 시기는 「외국인보호규칙」 별표 5와 같고, 청장등은 기온·습도, 외국인의 건강 상태,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에게 대여하는 침구를 세탁·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①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에게 수건·칫솔·치약·비누·화장지·위생용품, 그 밖에 입실시설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생활용품의 종류와 수량을 입실외국인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제4장 급식

제9조(음식물 등 제공) ①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루 세 차례의 식사 등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제공은 입실외국인의 건강유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출국대기실의 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입실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입실외국인이 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마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 검사)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위생과 진료

제11조(위생) ① 청장등은 항상 입실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출국 대기실의 시설 및 물품과 그 밖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국대기실을 청소 및 소독하고, 식기와 침구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환자 진료) ①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치료를 위해 외부 진료 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사를 부르거나 외부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자 조치 등) ① 청장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등을 비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입실외국인과 분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리된 사람이 사용한 시설·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입실외국인의 생활

제14조(물품 사용허가와 보관) ①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

는 동안 소지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입실외국인의 안전 또는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소지품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청장 등은 입실외국인이 다른 입실외국인의 안전 또는 출국대기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소지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및 사유를 고지하고 물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그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소지품을 보관하는 경우 금·은·보석·시계·반지 등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마약·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외출) ①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대기실 밖으로 외출하게 할 수 있다.

1. 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국 공관에 가야 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라 외부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3. 재판기일에 출석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 외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외출하게 할 때에는 도주방지 등을 위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처우에 대한 이의신청) ① 입실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등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 및 청장등은 이의신청 처리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이의신청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출국대기실에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요지를 이의신청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을 직접 면담할 수 있다.

⑥ 이의신청담당관은 처리가 끝난 경우 그 결과를 이의신청처리부에 기록하고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의신청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배상) ① 입실외국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입실시설·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실외국인이 출국대기실의 시설이나 물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제7장 면회와 통신 등

제18조(면회) ① 청장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

시간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실외국인 면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1. 입실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 입실외국인의 변호인인 변호사(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입실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면회 시간, 면회인 수, 면회 장소, 면회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면회를 위한 별도의 지정된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장소에서 접견이 어려운 경우 내부의 적정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입실외국인과 변호사 등과의 면회에는 직원 등은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⑤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면회의 신청이 있는 입실외국인을 면회 전에 송환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사전에 면회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외부와의 소통) ① 청장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국대기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노트북 등 문서작성기기, 편지나 문서(이하 ‘휴대전화등’이라 한다)의 사용이나 수·발신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입실외국인은 휴대전화등을 사용하거나 수·발신하는 경우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③ 청장 등은 입실외국인이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휴대전화등의 사용 및 수·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장 안전대책 등과 질서유지

제20조(안전대책 등) ① 청장등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입실외국인등을 공항만에 지정된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실외국인등을 출국대기실 밖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출국대기실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입실외국인의 말·행동·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⑤ 청장등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물의 내용이 입실외국인의 처우와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녹화 부분이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입실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되거나 운영·시행되어야 한다.

제21조(강제력의 행사) ① 담당공무원은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입실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입실자와 분리시킬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3.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②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 제1항에 따른 강제력 행사 또는 분리 조치를 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분리 조치를 한 후 즉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강제력 행사의 내용과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사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 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분리시킬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입실외국인등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법 제76조의4제2항 및 법 제56조의4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방법·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외국인 보호규칙」을 준용한다.

제9장 퇴실 절차

제22조(퇴실외국인 확인) 담당공무원은 출국 등을 위하여 입실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서 퇴실시킬 때에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등) ① 담당공무원이 입실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서 퇴실시킬 때에는 입실외국인에게 입실 당시와 다른 질병·신체장애·상처 또는 상처 흔적이 있는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담당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서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여해 준 물품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입국불허통지서 NOTICE OF ENTRY REFUSAL

발행번호 (No.)

인적사항 Personal Details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여권번호 Passport No.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하는 대한민국의 입국이 불허되었으므로 지체 없이 _____로 출국할 것을 명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of the Immigration Act,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determined that you are inadmissible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hereby shall leave for _____because of the following ground(s).

입국불허사유 Grounds for Entry Refusal	귀하는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You failed to show that you have met all the requirements mandated on paragraph 3 of Article 12 of the Immigration Act. ☐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His/her passport and the visa shall be valid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His/her prior permit for travel referred to in Article 7-3 (2) shall be valid ☐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The purpose of his/her entry shall comply with the status of stay ☐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The period of stay shall have been determin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 제11조에 따른 입국이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He/she shall not be subject to prohibition or refusal of entry under Article 11
출국대기장소 안내 Location of Waiting Room	법76조의2에 따라 귀하는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2 of the Act, you shall wait in the departure waiting room until your departure.

입국불허통지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았다면, 아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When the notice of entry refusal was personally handed to you by an immigration officer, please sign below

수령자 서명
Recipient's Signature

년 월 일

Date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직인

CHIEF, ○○IMMIGRATION OFFICE